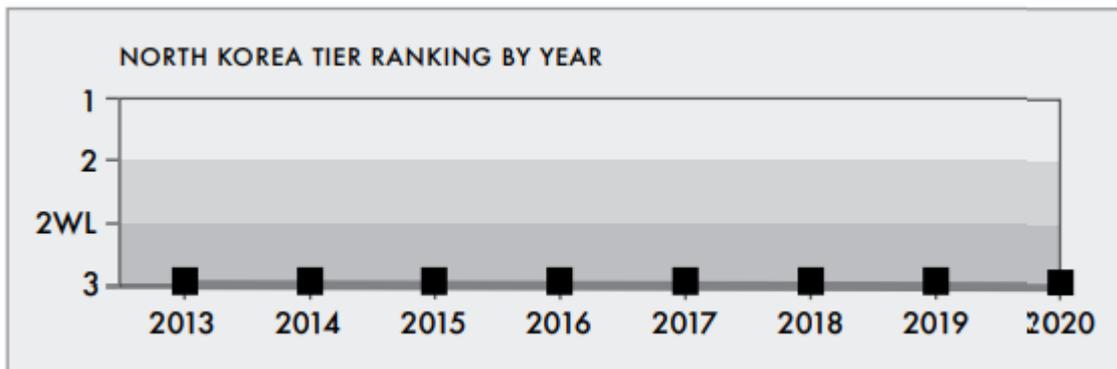


## 2020 년 인신매매 보고서

### 북한: 3등급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 정부는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조차도 온전히 준수하고 있지 않으며 기준 준수를 위한 의미 있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따라서 북한은 여전히 3 등급에 머물러 있다. 당해 보고 기간, 기존의 정치적 탄압 시스템의 일부인 수용소와 노동단련대에서 성인과 아동을 대규모로 동원하거나, 해외에서 계약직으로 일하는 북한 노동자가 처해지는 강제노동의 상태 등에서 정부의 강제 노동 정책 및 그 패턴이 나타났다. 정부는 국가가 후원하는 강제노동에서 창출된 수익을 정부 기능 및 기타 불법활동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사용했다. 정부는 인신매매를 해결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보이지 않았다.



### 우선 권고사항

재원(財源)과 정치적 탄압의 도구로 이용되는 해외 북한노동자의 강제노동과 수용소에서의 강제노동 등을 포함, 국가가 후원하는 강제노동을 중단해야 한다.

- 기착국에서 강제 송환된 피해자들에 대한 즉결처형 및 강제노동 등 기타 가혹한 처벌을 중단해야 한다.
- 해외 파견 노동자의 이동과 통신을 감시하고 제한하는 강압적 수단을 폐지해야 한다.
- 강제노동을 연장시킬 목적으로, 해외 노동자들의 임금을 압류하는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
- 북한 내부에서 착취당한 피해자와 해외에서 송환된 피해자에게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 성적 인신매매와 노동 인신매매를 불법화해야 한다.
- 법에 따라 인신매매 사건을 수사, 기소하고 인신매매범들에게 유죄 판결을 내려야 한다.
- 국제 인권감시단이 국내외 노동자들의

생활 및 근무 환경을 평가할 수 있게 함으로써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 • 인신매매 근절을 위하여 국제기구 및 비정부기구들과 협력해야 한다. • 주민들에게 직업 선택의 자유를 부여하며 본인의 의사에 따른 이직을 허용해야 한다. • 2000년 유엔에서 채택된 인신매매방지(TIP) 의정서에 가입해야 한다

## 사법처리

정부는 법 집행 노력에 대해 어떠한 보고도 하지 않았다. 북한 법률에서 성적 인신매매나 노동 인신매매를 불법화했는지 여부는 확실치 않다. 북한에서 공정한 재판은 보장되지 않았으며, 정부는 인신매매 사범을 처벌하는 법적 근거로서, 만약 관련 조항이 존재한다면, 어떤 법률 조항을 적용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 정부는 법 집행 자료를 제공하지 않았으며, 인신매매범이나 강제노동 및 기타 인신매매 범죄에 연루된 공무원에 대한 수사, 기소, 또는 유죄 판결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다.

## 피해자 보호

정부는 어떠한 보호 노력도 보고하지 않았다. 정부 당국은 피해자들을 파악하거나 이들을 위함 보호서비스 제공에 대해서도 보고하지 않았고, 비정부기구들이 이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지도 않았다. 당국은 인신매매범의 강요로 이루어진 불법 행위에 대해 피해자를 처벌했다. 정부는 송환된 피해자들을 월경했다는 이유로 범죄자로 취급했다. 보고에 따르면 당국은 잠재적 인신매매 피해자들을 포함해, 중국 당국에 의해 강제 송환된 북한 주민들을 심문소로 보냈고, 이들이 심문소에서 강제노동, 고문, 강제 낙태, 간수에 의한 성폭력을 당하게 했으며, 이 중 일부는 결국 수용소로 보내졌을 가능성이 있다. 탈북자들의 보고에 의하면, 중국에서 강제로 송환된 인신매매 피해자들이 정부에 의해 사형에 처해진 사례들이 있다.

## 예방 노력

정부는 인신매매를 방지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보고하지 않았다. 북한 정부의 억압으로 인해 많은 주민들이 탈북을 선택함으로써 기착국에서의 인신매매 위험에 취약한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북한은 인신매매 문제의 경각심을 높이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 정부는 성매매 수요를 줄이려는 노력도 하지 않았고, 외교관들을 대상으로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교육도 제공하지 않았다. 북한은 2000년에 제정된 유엔 인신매매방지협약에 가입하지 않았다.

## 인신매매 개요

지난 5년간 보고된 바와 같이—북한 공무원을 포함한—인신매매범들이 국내외에서 북한주민들을 착취하고 있다. 북한 내에서 강제노동은 제도화된 정치적 억압의 수단이며 경제체제를 지탱하는 기둥 역할을 한다. 정부는 대규모 인력 동원을 통해 자국 내 정치범 수용소나 노동 수용소 및 해외 작업장에서 주민들을 강제노동에 내몰고 있다. 법은 탈북을 범죄로 규정하고 있으며, 탈북하거나 제 3국 망명을 목적으로 북한을 떠난 이들은, 아동이라 하더라도, 무기징역과 강제 노동, 나아가 사형까지 포함한 가혹한 처벌의 대상이 된다. 북한은 정치범 수용소에 약 8-12만 명을, 그리고 노동 수용소나 교화소 등 다른 형태의 구금시설에 숫자를 파악할 수 없는 인원을 수용하고 있다. 많은 경우 이들 수감자는 정식 기소, 유죄 판결, 그리고 공정한 사법적 심리를 거쳐 형을 선고받지 않았다. 수용소에서 아동을 포함하여 모든 수감자는 열악한 조건에서 장시간에 걸쳐 벌목, 채굴, 제조, 및 경작 등의 강제노동에 처해진다. 수감자들은 비위생적인 생활 환경, 구타, 고문, 강간, 의료 서비스의 부재, 식량 부족 문제에 노출되어 있다. 많은 수감자들이 수감 기간 중에 사망한다. 북한 정부는 도, 지방, 지구 단위로 노동 수용소를 운영하면서 수감자들에게 단기간 동안 중노동을 강요하고 음식물을 거의 제공하지 않으며, 일상적인 구타를 포함한 각종 가혹행위를 자행하고 있다. 보고에 의하면 당국은 단순히 불법 장사에 연루되었거나 무직인 경우, 이들을 노동 수용소에 수감하고 있으며, 15일 이상 공식 고용 기록이 없는 주민은 최소 6개월 이상 노동 수용소에 수감될 위험이 있다.

북한 관리들은 공장, 농업, 벌목, 채굴, 인프라 구축, 정보기술, 건설 등 다양한 분야의 작업에 성인과 어린 학생들을 강제 동원했다. 어느 비정부기구는 북한 정부가 이러한 형태의 강제노동에 참여하지 않은 성인에 대해 식량 배급을 하지 않거나 세금을 부과했다고 보고했다. 학교는 정부로부터 아동이 수행한 노동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고, 관리들은 때로 특별 프로젝트를 위해 학생들을 단기간 공장 및 현장에 보내 일을 시켰다. 또한, 학교 교장과 교사는 개인적 영리의 목적으로 학생들을 착취, 농장이나 건설현장에서 강제노동을 시킨다. 이러한 학생 강제노동의 결과로 신체적·정신적 외상, 영양실조, 탈진, 발육부진 등이 나타났다.

외국의 기업이나 정부와 맺은 양자계약 등에 따라 정부가 해외로 파견한 북한 노동자들도 강제노동 상태에 직면한다. 믿을만한 보고에 따르면, 이러한 계약에 따라 근무하는 북한 노동자들 다수가 한번에 최장 3년 동안 제한된 임금을 받으면서 유해한 온도에서 지나치게 오랜 시간 노동하게 된다. 보고에 의하면 노동자들은 의류, 건설, 신발 제조, 서비스업, IT, 벌목, 의료, 제약, 식당, 수산물 가공, 섬유, 조선에 이르는 다양한 분야에서 일한다. 북한 정부의 ‘감시인(minder)’들은 노동자들의 이동과 통신을 제한하고 감시한다. 이들 노동자는 탈출을 시도하거나 외부인에게 불만을 털어놓을 경우 본인과 북한에 남아 있는 가족들에 대한 정부의 보복이 있을 것이라는 위협을 받는다. 노동자들의 급여는 압류되어 종종 북한 정부가 통제하는 계좌로 입금되며 북한 정부는 정부 사업에 대한 각종 “자발적” 기여금 명목으로 급여의 대부분을 갈취하는 행위를 정당화하고 있다. 노동자는 노동의 대가로 북한 정부에 지급되는 금액의 극히 일부만을 수령하며 목표 생산 및 작업량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 처벌을 받는다. 비정부기구 보고에 따르면, 북한정부는 해외 노동자로부터 수령한 임금의 70-90 퍼센트를 노동자들에게 주지 않고 있으며, 이렇게 지급을 유예하고 있는 금액이 연간 수 억 달러에 이르며 이는 북한정부 수입으로 귀속된다고 한다. 보고에 의하면 일부 해외 파견 노동자의 임금은 당사자가 귀국할 때까지 당국에서 보관하므로 착취와 강압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 다른 보고에 의하면 이들 근로자는 하루 평균 12-16시간, 때로는 하루 최장 20시간을 일하며 한 달에 고작 하루나 이틀만 쉴 수 있다.

2017년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결의를 통해 유엔 회원국들이 북한 노동자들에게 근로 허가를 신규 및 갱신 발급하지 못하도록 금지했으며, 난민이나 망명 신청자 등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 2019년 12월 22일까지 해외에서 소득 활동이 있는 북한 주민들을 본국으로 송환하도록 조치했다. 2019년 말 기준으로, 여전히 수만 명의 북한 노동자가 해외에서 일하고 있으며 주로 러시아와 중국이다. 2019년 현재 아직 북한 노동자들이 존재한다고 알려진 나라들은 다음과 같다. 알제리, 앙골라,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적도 기니, 에티오피아, 기니, 이탈리아, 키르기스스탄, 라오스, 말레이시아, 말리, 몽골, 모잠비크, 네팔, 나이지리아, 오만, 폴란드, 카타르, 콩고공화국, 세네갈, 탄자니아, 태국, UAE, 베트남, 잠비아, 짐바브웨다. 당해 연도, 이중 많은 국가들이 자국 내 북한 노동자들 대부분 혹은 상당수를 송환했다. 그러나 일부 보고에 따르면 몇몇 국가들은 여전히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거나,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위반하면서 북한 노동자들이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취업허가 및 기타 서류 발급을 재개했다고 한다. 러시아의 경우, 전년 대비 북한 주민에게 발급된 관광 및 유학 비자의 수가 5배 이상 늘었으며, 이는 이 비자들이 노동자들의 입국 및 노동에 우회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것을 강하게 시사한다. 러시아 통계에 따르면 2020년 1분기 러시아에 입국한 북한 주민은 약 7,000명에 달했다. 이 중, 753명이 러시아 이민국에 근로자로 등록되어 있으며, 1,975명은 학생, 대략 3,000명은 관광객으로 등록되어 있는데, 이는 전년 대비 학생과 관광객이 몇 배 증가한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중국의 공장들 역시 신규로 혹은 기존의 북한 노동자를 계속 고용하고 있다는 보고가 다수 있었다.

북한 정부의 가혹한 인권유린은 인접국 중국에서 인신매매를 부채질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불법으로 중국에 거주하는 북한 난민과 망명 신청자들 다수가 인신매매에 특히 취약하며, 일부 북한 여성들은 중국에 도착하자마자 인신매매범의 꼬임에 넘어가거나 강제로 약물을 주입받거나 감금 또는 납치되기도 한다. 또한 인신매매범들은 중국에서 북한까지 뻗어 있는 네트워크를 운영, 북한 여성들과 여자아이들을 모집해 중국으로 밀수출한다. 이 여성들은 인신매매범의 신체적 학대와 성적 착취의 대상이 되거나, 집창촌 또는 인터넷 섹스 사이트를 통해 강제로 성매매를 하거나, 강압에 의해 나이트클럽이나 가라오케에서 접대부로 일을 한다.

인신매매범들은 북한 여성들을 중국 남성들에게 팔아 넘겨 강제 결혼을 시키고, 이들은 결국 성매매, 가사노동, 농사, 혹은 다른 유형의 일을 강요 받는다. 이런 피해자들은 신분증명서가 없거나 중국 남성들의 아이를 낳은 경우가 많아, 탈출에 방해 요소가 된다. 북한 여성과 중국 남성 사이에 태어난 약 3만 명의 어린이들이 출생 신고가 되지 않았고, 이로 인해 무국적자가 되고 착취의 위험에 노출된다. 중국 당국에 적발될 경우 북한으로 강제 송환되어 노동 수용소에서의 강제노동, 고문, 강제 낙태, 사형 등 가혹한 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다.